

「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
일괄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 · 양진오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김민성 · 김영길 · 김영태 · 김원섭 · 김춘남 ·
박세채 · 소진혁 · 이명희 · 이지연 · 장미경 ·
정지원 의원(11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9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1월 26일

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기존 구미시 공공시설 조례 전반에 걸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·우대 규정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·우대 정비(안 제 1조~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 -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 제2조, 제24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11.19. ~ 11. 24.) 결과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○ 본 조례안은

- 기존 구미시 공공시설 조례 전반에 걸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감면·우대 규정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, 지역사회 전반에 보훈과 존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훈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.

-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병역명문가 수 증가와 시설 이용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, 중·장기 관점에서 재정 소요 변화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됨.
- 아울러, 감면·우대 적용 과정에서 부서별 기준이 상이하여 민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·서류·인증기준을 일원화하고, 병역명문가 대상자의 실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